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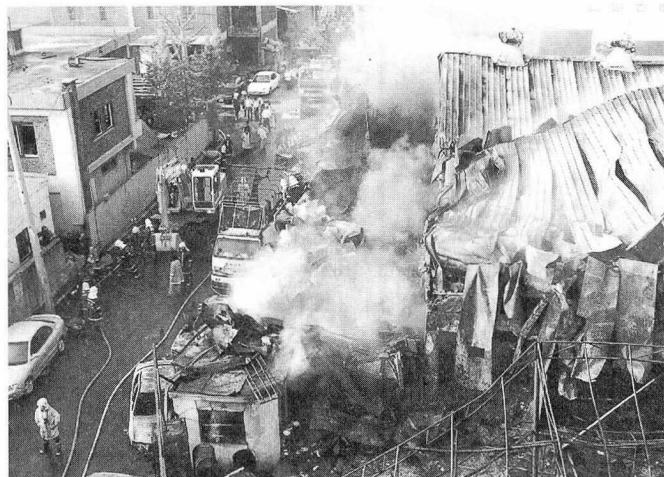
보험금액과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분쟁조정사례

이 성 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책임역

1. 머리말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한도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설정한 보험가입금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마다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나,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동산의 집합에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호에서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분쟁조정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금융분쟁 조정사례

가. 다툼이 없는 사실

1990. 9. 18 신청인 서울○○은행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목적물 소유자/ ○○하이파일 대표이사 ○○외, 보험목적물/건물 및 기계, 보험금액/ 건물 2억 1천만원 · 기계 6억 1천만원, 보험기간 /90.9.8~91.9.8(1년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

1991.5.20 위 건물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로 위 보험의 목적물이 소손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본 건 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물의 표시에 기계라고 되어 있고, 보험금액이 6억 1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각 기계별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각 기계별 보험가입금액은 약관 제13조 4항에 따라

화재 당시
존재한 기계
에 대해 산정한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금액
을 안분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또한 변전설비에 관
하여 금 107,320,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피신청인이 동력간선의 피해는
건물 손해로 보아 이를 기계 손해에서 제외
하고 변전소 내의 시설만을 손해로 계산하여
금 1,449,205원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자인 서울 ○○은행은 동
은행에 담보물을 제공한 감정서상의 건물을 기준
으로 부보 요청하였고, 보험증권에 첨부된 감정서
에는 해당기계의 명세가 있으며, 각 개별기계마다
감정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각 개별기계의 감
정금액을 해당보험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하며, 또한 총 감정금액과 총보험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금액 총액과 보험금액 총액과
의 비율로 개별목적물의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것
이 타당하므로 본 건 보험계약은 하나의 보험가
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
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계약자는 동력간선공사
와 변전설비를 포함하여 변전설비 부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화재보험 목적물상 동 공장의
동력간선공사는 건물에 해당되고 변전설비는 기
계기구에 해당되므로 동력간선 공사에 대하여는
건물 손해액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본 건 보험계약 신청서 및 보험증권
에 의하면 본 건 보험의 목적물인 기계는 철근 콘
크리트조 슬라브층 1층 건물 내에 수용하는 것으
로 하고 보험금액은 기계에 대하여 6억 1천만원
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보



험에
가입한 것
임을 인정할 기
재가 전혀 없고 감
정평가서의 기계명세와
사건발생 당시에 위 건물
내에 수용되어 있던 기계명세와
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금액이 보험가액의 협정금액인지 아니면 보
험금액인지 또는 참고로 첨부된 것인지 불명하여
이를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감정금액이 보험금
액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해 각 기계에 대한 감정금액을 보
험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위 계약서란 보험증권
에 명백하게 기재되거나 또는 각 기계 및 이에 대
한 보험금액을 정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및 보험증권에 첨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보험계약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
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보
험약관 제13조 4항에 따라 기계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안분하여 보험

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력 간선공사가 건물공사의 일부인지 아니면 변전설비공사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화재사고 손해사정보고서(○○손해사정주식회사 : '91.7.23)에 의하면 동력 간선공사는 건물공사의 일부로 보아 동력간선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동력간선은 건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이 동력간선 공사에 따른 손해액을 건물손해의 일부로 보아 보험금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본 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3. 맷는 말

가. 본 분쟁조정사례의 의의

본 건의 쟁점은 첫째, 각 보험목적물마다 보험금액을 설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보험목적물에 포괄하여 보험금액을 설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는 여부와 둘째, 동력간선을 건물손해로 보아야 하는지 기계장치에 대한 손해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계류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기계별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기계 전체에 대하여 보험금액이 포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동력간선부분의 손해는 손해사정보고서에 나타난 사실을 증거로 채택하여 건물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 목적의 단위

동산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동산을 제외하고는 그 종류와 수량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보험

목적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산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소재하는 동산의 양과 보험가액을 감안하여 총괄적으로 보험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부보되는 보험목적의 단위는 보험목적이 개별보험이나 집합보험이나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보험목적물이 개별보험의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가 되고 집합보험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는 집합체로서 식별 가능한 범위를 단위로 한다.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수용장소마다 보험의 목적을 정하여야 한다. 동산의 위험도는 동산종별에 따르는 외에 수용건물의 위험도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때로는 2동 이상의 건물 내에 수용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1개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을 보험 목적 1개마다 계약하는 단일계약과는 달리 포괄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동력간선의 손해분배와 관련한 문제

동력간선을 건물손해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계손해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지금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화재보험에 건물만 부보한 경우 동력간선이 건물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분에 포함되는 동력간선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구별이 필요하다.

참고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동력배선 중 건물의 구조체에 설치된 동력배선은 건물로 평가하고 건물의 구조체에서 별도로 분기되는 배선은 기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